

9. 建設共濟組合法施行令 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4-27號 1994. 1. 22

1. 개정이유

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보증 및 융자제도의 개선 등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체제와 제도를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법이 개정·공포됨('93. 12. 10)에 따라 보증의 내용 및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취급기관 명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조문의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음.

2. 주요골자

- 가. 건설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대상에 법률에서 정한 입찰보증, 차액보증 등 8개보증과 현행 자재구입보증, 부지매입보증등 4개보증외에 대출보증, 어음보증 등 7개보증을 추가하고, 보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나. 건설공제조합이 행하는 보증에 대하여 그 내용·범위 및 조건등을 명시

한 보증약관의 작성근거 마련

- 다. 건설공제조합이 업무상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금융기관을 은행, 단기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함.
- 라.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보고의 간소화를 위하여 건설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예산의 보고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
- 마. 기타 현행 시행령상의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건설경제과장, 전화 500-2903, 290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